

#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## 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유 용 위원장님 그리고 서울시와 시민들을 위해 동행해 주시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. 안녕하십니까? 행정자치위원회 한 기 영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
-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위원회 구성에 있어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위원이 없고 생활임금위원회 구성이 자치구별로 상이하여 실제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할 위원을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었습니다. 이에 본 조례안 제5조 2항 5호를 신설하여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을 생활임금위원회 구성에 포함 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- 또한 매년 생활임금 고지일이 상이함에 따라 서울시 및 자치구 예산편성에 반영하기가 어려워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였습니다. 이에 「최저임금법」 10조에 의해 최저임금이 고시된 이후 45일 이내에 서울시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시장은 생활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일부개정 조례안에 추가하였습니다.
  
-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서울시와 서울시민의 경제력과 적정한 생활임금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